

# 임종돌봄(생애말기돌봄 · 호스피스) 안내문

## 연명의료 결정제도 목적

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.  
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,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,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·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.

##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[장소]
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- 작성 가능 기관 - 등록기관 찾기

\*총 3건

| 기관명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 보기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세명종합병원 | 248.8km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08, (중방동)  | 053-819-8550 |    |
| 의료법인수성의료재단영남요양병원   | 249.1km 경상북도 경산시 감변동로 110, (중방동) | 053-814-0171 |    |
| 의료법인송백의료재단 늘푸른요양병원 | 249.3km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158 (중방동)   | 053-813-0660 |    |

| 구분    |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               | 연명의료계획서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상    | 19세 이상의 성인                 |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 |
| 작성    | 본인이 직접                     |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  |
| 설명 의무 | 상담사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의사                   |
| 등록    | 보건복지부 지정<br>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|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<br>의료기관 |